

의안번호	제 2009 - 19 호
의 결 연 월 일	2009. 9. 21. (제20차 회의)

보  
고  
안  
건

## 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제 출 자	운영지원단장
-------	--------





# 목 차

I. 전문위원 업무지원 .....	1
II. 전문위원 위촉 .....	1
1. 개요 .....	1
2. 추진 내역 .....	1
III. 2008년 사건 대상 양형기준 효과 분석 .....	2
1. 목적 .....	2
2. 추진 경과 .....	3
3. 분석 내용 .....	3
IV.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.....	4
1. 사건 접수 .....	4
2. 처리 현황 .....	7
V. 추가 양형자료조사 방안 .....	10
1. 개요 .....	10
2. 추가 조사방법 .....	11
3. 예상 소요기간 .....	12

별지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

---

---

## I. 전문위원 업무지원

- 운영지원단(기획운영과, 통계분석과)은 전문위원 회의자료 준비, 회의록 작성 등의 전문위원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
- 전문위원 회의 현황

회의명		일 시	안 건
전문위원 전체회의	제19차	2009. 9. 8. 19:20	○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 죄 선정
1팀 회의	제24차	2009. 9. 3. 19:40	○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 죄 선정
2팀 회의	제16차	2009. 9. 4. 17:30	○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 죄 선정

## II. 전문위원 위촉

### 1. 개요

- 2009. 9. 1.자로 박형관 전문위원 사임
-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

### 2. 추진 내역

#### 가. 고려 사항

-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
  - 종전 연구성과를 토대로 추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
- 전문위원 선정원칙의 반영
  -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·강화
  -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

## 나. 위촉 방안

- 서봉규 대검찰청 연구관(검사)

※ <별지>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기재 참조

## 다. 진행 경과

- 2009. 9. 3. 위촉(안) 결재 보고
- 2009. 9. 3. 위원장 결재
- 2009. 9. 21. 위촉식(예정)

## 라. 전문위원 구성

- 수석전문위원
- 제1팀 : 김현석(팀장), 김용철, 서봉규, 이상원, 조은경 전문위원
- 제2팀 : 이주형(팀장), 김한균, 박영식, 윤정근, 최석운 전문위원

# III. 2008년 사건 대상 양형기준 효과 분석

## 1. 목적

- 살인, 뇌물, 성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최초 양형기준이 2009. 4. 확정되어 2009. 7. 이후 시행 중임
- 운영지원단은 2009. 3. 23. 위원회 제16차 회의 및 2009. 4. 13. 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위 양형기준(당시 양형기준안)의 적용효과를 예측·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음
  - 양형기준은 2004. 3.경부터 2007. 2.경까지 사이에 선고된 사건의 양형자료(판결문, 사건기록 등) 및 2007년에 선고된 단일범 사건의

양형자료(판결문 등) 등을 토대로 설정된 것이므로, 위 적용효과 분석 또한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실시한 것임

- 2008년 선고 사건에서의 양형실무의 변동 추이를 확인·점검하는 차원에서 위 사건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효과 분석을 실시함

## 2. 추진 경과

### 가. 분석 기간

- 2009. 8. 10. ~ 2009. 9. 10.

### 나. 분석 대상

- 2008. 1. 1. ~ 2008. 12. 31.까지 사이에 선고된 8개 범죄 단일범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(판결문)

### 다. 분석 방법

- 양형위원회 제16차 및 제17차 회의에서 보고한 양형기준(안) 적용 효과 분석방법과 동일함
- 즉, 실제형량과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준부에 따른 형량범위 중간값을 비교하여 형량의 경중을 파악함

## 3. 분석 내용

-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함
- 분석 내용은 별도 보고서 기재와 같음

## IV.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

### 1. 사건 접수

○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. 7. 1.부터 8. 31.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

◆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◆

분류죄명	세부죄명	사건구분			전체
		고합	고단	고정	
살인죄	살인	55	0	0	55
	살인미수	70	0	0	70
	존속살해	4	0	0	4
	존속살해미수	1	0	0	1
뇌물죄	뇌물공여	11	32	2	45
	뇌물수수	11	24	0	35
	부정처사후수뢰	1	2	0	3
	수뢰후부정처사	1	0	0	1
	제3자뇌물교부	0	2	0	2
	특가범(뇌물)	5	0	0	5
성범죄	강간	14	0	0	14
	강간살인	1	0	0	1
	강간상해	14	0	0	14
	강간치상	51	0	0	51
	강도강간	1	0	0	1
	강제추행	1	37	43	81
	강제추행상해	4	0	0	4
	강제추행치상	17	1	0	18
	미성년자의제강간	4	0	0	4
	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	1	5	2	8
	성폭력범죄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	54	0	2	56
	성폭력범죄(강간등살인)	1	0	0	1
	성폭력범죄(강간등상해)	19	0	0	19
	성폭력범죄(강간등치상)	21	0	0	21

분류죄명	세부죄명	사건구분			전체
		고합	고단	고정	
성폭력범죄(장애인)	성폭력범죄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	14	3	0	17
	성폭력범죄(절도강간등)	4	0	0	4
	성폭력범죄(주거침입강간등)	37	0	0	37
	성폭력범죄(친족관계에의한강간)	7	0	0	7
	성폭력범죄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	6	0	0	6
	성폭력범죄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	1	0	0	1
	성폭력범죄(특수강간)	43	0	0	43
	성폭력범죄(특수강도강간등)	6	0	0	6
	성폭력범죄(특수강제추행)	4	0	0	4
	성폭력범죄(특수준강간)	1	0	0	1
	준강간	6	0	0	6
	준강제추행	2	11	4	17
	청소년의성보호(청소년강간등)	69	2	6	77
	강도죄	강도	15	0	0
강도살인		3	0	0	3
강도상해		85	0	0	85
강도치상		2	0	0	2
준강도		9	0	0	9
준특수강도		1	0	0	1
특수강도		47	1	0	48
특가법(강도)		1	0	0	1
횡령·배임죄	배임	4	83	16	103
	배임수재	22	34	0	56
	배임증재	5	16	1	22
	업무상배임	2	37	10	49
	업무상횡령	5	234	105	344
	특경가법(배임)	29	3	0	32
	특경가법(횡령)	27	0	0	27
	횡령	5	216	129	350
위증죄	위증	3	246	57	306
무고죄	무고	3	169	104	276
총 계					2,469

◆ 이중경합범(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) ◆

분류죄명	세부죄명	사건구분			전체
		고합	고단	고정	
살인죄	살인	26	0	0	26
	살인미수	31	0	0	31
	존속살해	2	0	0	2
	존속살해미수	1	0	0	1
뇌물죄	뇌물공여	14	4	0	18
	뇌물수수	1	6	0	7
	부정처사후수뢰	1	1	0	2
	수뢰후부정처사	4	0	0	4
	특가범(뇌물)	6	0	0	6
성범죄	강간	24	0	0	24
	강간살인	1	0	0	1
	강간상해	17	0	0	17
	강간치상	24	0	0	24
	강도강간	5	0	0	5
	강제추행	3	17	21	41
	강제추행상해	1	0	0	1
	강제추행치상	5	1	0	6
	성폭력범죄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	23	0	0	23
	성폭력범죄(강간등살인)	2	0	0	2
	성폭력범죄(강간등상해)	11	0	0	11
	성폭력범죄(강간등치상)	12	0	0	12
	성폭력범죄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	2	0	0	2
	성폭력범죄(절도강간등)	1	0	0	1
	성폭력범죄(주거침입강간등)	16	0	0	16
	성폭력범죄(친족관계에의한강간)	13	0	0	13
	성폭력범죄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	1	0	0	1
	성폭력범죄(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)	1	0	0	1
	성폭력범죄(특수강간)	26	0	0	26
	성폭력범죄(특수강도강간등)	36	0	0	36
	성폭력범죄(특수강제추행)	4	0	0	4
	성폭력범죄(특수준강간)	6	0	0	6
준강간	3	0	0	3	

분류죄명	세부죄명	사건구분			전체
		고합	고단	고정	
	준강제추행	0	3	0	3
	청소년의성보호(청소년강간등)	19	0	0	19
강도죄	강도	19	2	0	21
	강도살인	7	0	0	7
	강도상해	78	0	0	78
	강도치사	1	0	0	1
	강도치상	4	0	0	4
	준강도	6	0	0	6
	특수강도	65	2	0	67
	특가법(강도)	2	0	0	2
	특가법(강도상해등재범)	1	0	0	1
횡령· 배임죄	배임	0	3	0	3
	배임수재	5	3	0	8
	배임증재	1	1	0	2
	업무상배임	0	24	3	27
	업무상횡령	4	98	14	116
	특경가법(배임)	19	0	0	19
	특경가법(횡령)	26	0	0	26
	횡령	0	26	12	38
위증죄	위증	0	9	0	9
무고죄	무고	0	28	3	31
총 계					861

-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, 정식재판청구사건, 미수범사건,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

## 2. 처리 현황

- 2009. 7. 1.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(단일범, 경합범)으로서 2009. 8. 31일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

☞ 범죄군별 처리건수

		사건구분			전체
		고합	고단	고정	
살인죄	수	20	0	0	20
	비율	100.0%	0%	0%	100.0%
뇌물죄	수	4	3	0	7
	비율	57.1%	42.9%	0%	100.0%
성범죄	수	55	9	4	68
	비율	80.9%	13.2%	5.9%	100.0%
강도죄	수	27	0	0	27
	비율	100.0%	0%	0%	100.0%
횡령·배임죄	수	4	64	23	91
	비율	4.4%	70.3%	25.3%	100.0%
위증죄	수	0	17	0	17
	비율	0%	100.0%	0%	100.0%
무고죄	수	0	13	7	20
	비율	0%	65.0%	35.0%	100.0%
전체	수	110	106	34	250
	비율	44.0%	42.4%	13.6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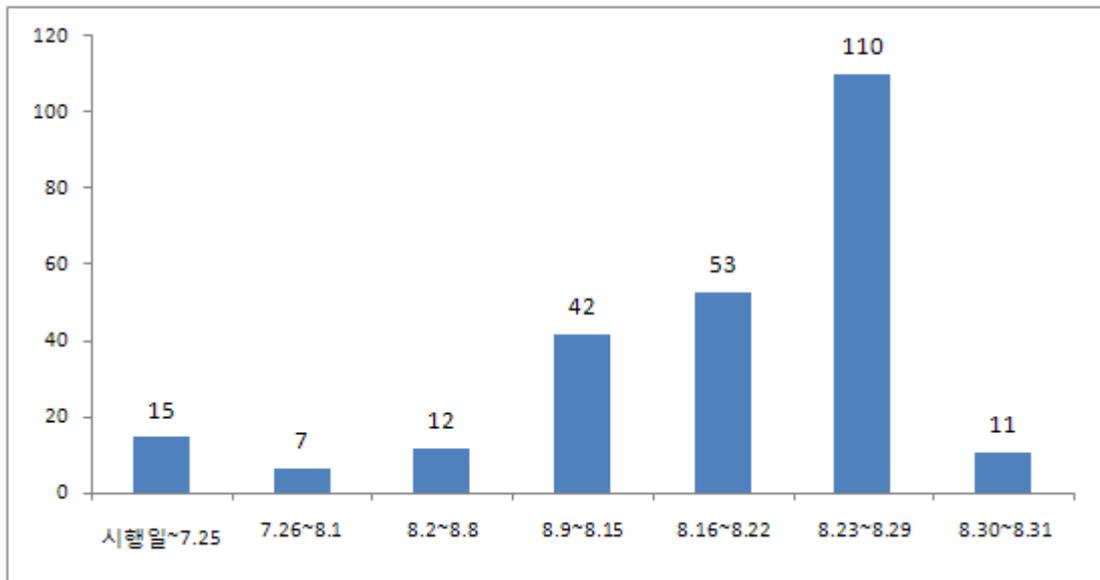
☞ 세부죄명별 처리건수

범죄군	세부죄명	수
살인죄	살인	3
	살인미수	17
	전체	20
뇌물죄	뇌물공여	3
	뇌물수수	4

	전체	7
성범죄	강간	3
	강간상해	5
	강간치상	6
	강제추행	9
	강제추행상해	1
	강제추행치상	2
	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	2
	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	9
	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	4
	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	2
	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	6
	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	7
	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	2
	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제추행)	1
	준강간	1
	준강제추행	3
	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	1
	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	4
전체	68	
강도죄	강도	4
	강도상해	9
	강도치상	1
	준강도	2
	특수강도	11
	전체	27
횡령배임 죄	배임	9
	업무상배임	4
	업무상횡령	45
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	1
	횡령	32
	전체	91

위증죄	위증	13
	위증교사	4
	전체	17
무고죄	무고	20
	전체	20

☞ 처리건수 변동추이



## V. 추가 양형자료조사 방안

### 1. 개요

#### 가. 필요성

-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가 결정되면 이후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- 대상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확보한 확정사건(2004. 3. - 2007. 2.) 양형자료 이외에 추가로 양형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양형기준안 연구시 활용할 자료를 확충할 수 있음

- 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관련하여서도 2008. 8.경부터 2008. 9.경 사이에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

## 나. 고려 사항

- 확정사건(2004. 3. - 2007. 2.) 양형자료가 기본적으로 양형기준 설정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
- 다만, 개별범죄에 고유한 특성 및 형량분포의 파악에 적절한 단일범을 중심으로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별죄명별 기준설정을 위한 보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
- 추가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에 관련된 예상 소요시간, 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의 추가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

## 2. 추가 조사방법

### 가. 개요

- 원칙적으로 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관련하여 실시한 추가 양형자료조사와 동일한 방식, 즉 판결문과 범죄경력조회를 대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함
- 다만, 최소 조사건수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

### 나. 추가 조사건수

- 범죄군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본범죄를 선정한 다음 기본범죄는 500건, 나머지 개별범죄는 100건(내지 200건)을 최소 조사건수로 정하고 최소 조사건수에 미달하는 사건수만큼 추가조사를 실시함
- 조사 및 분석의 편의,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단일범 위주로

조사를 진행함

### 3. 예상 소요기간

- 판결문 추출 : 1주
- 판결문 및 범죄경력조회 조사 : 2주
- 양형자료 입력 : 1주
- 양형자료 분석 : 2주

##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

### ■ 서봉규(徐奉揆)

- 1970. 11. 29.생
- 1997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
- 2000. 5 - 2002. 2    서울지방법검찰청 검사
- 2002. 2 - 2003. 2    수원지방법검찰청 여주지청 검사
- 2003. 2 - 2005. 2    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
- 2005. 2 - 2007. 2   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
- 2007. 2 - 2009. 8    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
- 2009. 9 -             [現] 대검찰청 연구관